



제418회국회(정기회)
제1차 정무위원회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〉

■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2201759호)

2024. 9.

정 무 위 원 회

전 문 위 원 최 기 도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제안자 : 정희용의원 등 11인
2. 제안일 : 2024. 7. 15.
3. 회부일 : 2024. 7. 16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생계지원금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.

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,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3 등).

Ⅲ. 검토의견 :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

-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하고,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3 등).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2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“배우자”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.
제3조(적용 대상자) <u>참전유공자</u> 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	제3조(적용 대상자) <u>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</u> ----- -----. -----.
제5조(등록 및 결정) ① <u>참전유공자</u> 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	제5조(등록 및 결정) ① <u>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.

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.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
2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

3. (생략)

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

② -----

-----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-----

-----.

③ -----

-----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호-----

-----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-----
-----.

1. -----
-----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-----

2. -----
-----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, 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⑤ (생략)

제5조의2(신상 변동의 신고 등)

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
1. ~ 7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

-----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-----

-----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5조의2(신상 변동의 신고 등)

① -----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-----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9. 배우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

10.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

② -----

하고,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3. (생략)

③ (생략)

제6조의3(생계지원금) ①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<신설>

<신설>

② ~ ⑤ (생략)

제8조의6(보훈재가복지서비스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,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추가등록결정

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3(생계지원금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-----

--.

1.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

2. 배우자(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6(보훈재가복지서비스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배

우자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
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
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
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)

② · ③ (생 략)

제39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
의 배제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
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
받을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
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
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
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
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.

1. ~ 5. (생 략)

<신 설>

② (생 략)

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5
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참전유

우자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39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
의 배제) ① -----

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가
받을-----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
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
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제1항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
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
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
를 하지 아니한다.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④ -----
-----참전유

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제39조의2(자료의 제공 요청 등)

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, 가족관계등록사항, 재외국민등록사항, 군복무에 관한 자료, 국세·지방세에 관한 자료, 소득·재산에 관한 자료, 국민연금·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·보험에 관한 자료와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공자 또는 그 배우자-----

-----제3항-----

⑤ -----

-----제1항 또는 제2항-----

제39조의2(자료의 제공 요청 등)

① -----

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	-----,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제5조에 따른 <u>참전유공자</u> 의 등록에 관한 사무	1. ----- <u>참전유공자</u> 또는 그 배우자----- -----
2. 제5조의2에 따른 <u>참전유공자</u> 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	2. ----- <u>참전유공자</u> 또는 그 배우자----- -----
3. ~ 8. (생략)	3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□ 현행 보훈 관련 법령은 생계가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·보훈보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에게는 생활조정수당을, 5·18민주유공자·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과 참전유공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생계지원금을 지급함.

○ 생활조정수당은 가구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이면서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·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(매월 최소 24.2만원~최대 37만원)되는 수당임.

-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으로 가구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이면서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5·18민주유공자·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과 참전유공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(매월 10만원)되고 있음.

<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개요>

구분	생활조정수당			생계지원금
사업 내용	◦ 생계가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수당 지급			◦ 생계가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수당 지급
대상	◦ 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*·보훈보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 * 전몰·순직·전상·공상군경, 무공·보국수훈자, 순직·공상공무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사망·부상·공로자,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사망·부상·특별공로자			◦ 5·18민주유공자·특수임무유공자 : 본인 및 선순위 유족 ◦ 참전유공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: 본인
근거	◦ 「독립유공자법」 제14조, 「국가유공자법」 제14조, 「보훈보상자법」 제14조			◦ 「5·18민주유공자법」 제89조의2, 「특수임무유공자법」 제75조의2, 「참전유공자법」 제6조의3, 「고엽제법」 제7조의10,
지급 기준	◦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생계곤란자 중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			◦ 80세 이상으로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생계곤란자 중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
지급액	가구원수	소득수준		◦ 매월 10만원
	가족 3인 이하	중위소득 32% 이하	31.1만원	
		중위소득 31~40%	27.7만원	
		중위소득 41~50%	24.2만원	
	가족 4인 이상	중위소득 32% 이하	37만원	
		중위소득 31~40%	33.6만원	
		중위소득 41~50%	30만원	
지원 현황	◦ 14,957명, 492억원 지원('23년 결산 기준)			◦ 3,550명, 42억원 지원('23년 결산 기준)

자료: 국가보훈부

□ 생계가 곤란한 참전유공자는 현행법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데, 현재 5·18민주유공자¹⁾·특수임무유공자²⁾의 선순위 유족에게는 생계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반면, 참전유공자의 경우 본인에게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□ 이에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,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.

□ 현행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가구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,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역시 고령일 가능성이 크며, 참전유공자 사망 시 생계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경우 배우자의 생계곤란이 심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.

1)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제89조의2(생계지원금)

① 8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5·18민주유공자

2. 5·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

2)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제75조의2(생계지원금)

① 8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특수임무유공자

2.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

□ 또한, 참전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신체적 희생이 없는 무공보국수훈자의 경우 배우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 형평성 차원에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음.

□ 참고로,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, 연간 약 22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.

<개정안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>

구 분	대상인원 (명)	적용 비율	지급인원 (명)	단가 (천원)	소요예산 (천원)
참전유공자 배우자	143,976	13.2%	19,005	100	22,806,000

* (대상인원) 기사망 유공자 배우자까지 포함한 인원 추계

* (적용비율) '22년 기준 80세 이상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비율 약 13.16%

[= (80세 이상 여성 중 기초생활수급인원 + 70세 이상 여성 중 차상위 인원) / 80세 이상 여성 총 인구](통계청 자료 참고)

* 배우자 평균연령 85세(6.25참전배우자 87세, 월남전 참전배우자 74세)

- '23.7. 참전유공자 배우자 실태조사 참고(국가보훈부)

자료: 국가보훈부

□ 한편,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형평성 측면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.³⁾

3) 참전유공자 배우자 뿐 아니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경우, 연간 약 26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.

구 분	대상인원(명)	적용 비율	지급인원(명)	단가(천원)	소요예산(천원)
참전유공자 배우자	143,976	13.2%	19,005	100	22,806,000
고엽제후유의증 배우자	21,298	13.2%	2,811	100	3,373,200
총계	165,274		21,816	100	26,179,200

□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, 생활조정수당, 생활지원금⁴⁾ 등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금의 경우 보훈가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유족에게도 지급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.

□ 반면, 기획재정부는 참전과 무관한 배우자에게까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보상하는 보훈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.

문 의 처
02)6788-5107

4) 생활지원금은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대상은 기초수급자(생계급여 및 의료급여), 중위소득 70% 이하자, 기초연금수급자(단독 또는 부부세대)임.